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

(김한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61
----------	-------

발의연월일 : 2017. 12. 29.

발의자 : 김한정 · 소병훈 · 김철민
노웅래 · 원혜영 · 오영훈
안민석 · 송기현 · 최운열
문희상 · 이 훈 · 신창현
설 훈 의원(13인)

제안이유

최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는 등 가축전염병 및 축산물 안전 문제로 인하여 국민의 생계와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임.

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상황을 개선하고자 축산시설 및 가금이 동현황에 대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의무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계약사육농장의 점검사항에 축산업 허가요건 준수 여부 포함, 살처분 가축 처리방법에 화학적 처리 방법 추가,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화조치 및 지원 마련,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 농가에 지급, 방역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추가, 철저한 역학조사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토록 개정을 추진코자 함.

주요내용

- 가. 축산시설 및 가금이동현황에 대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을 의무화하는 규정 신설(안 제3조의3제3항 신설)
- 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축산농가 해충방제를
하고자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안 제5조의3 및 제5조의4 신설)
- 다.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책임 강화를 위해 계약사육농장의 점검사항
에 축산업 허가요건 준수 여부를 포함(안 제6조의2제2항)
- 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에 정액 등 처리업자 추가
(안 제17조제1항)
- 마. 환경 부하 완화를 위해 살처분 가축 처리방법 및 재활용 방법에
화학적 처리(사체 알칼리 가수분해 등) 방법 추가(안 제22조)
- 바.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화조치 및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
거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 사.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 사업자인 경우, 사육경비 수급권 보
호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안 제48조제1항제
3호)
- 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 규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하
여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추가(안 제48조제3항제1호)
- 자. 철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차량 등의 이동정보 및 가축거래
내역 파악을 위해 일부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 개인정보 수집규정

마련(안 제52조의3 신설)

차.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55조의
2제1호 신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거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를 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살처분 · 소각 · 매몰”을 “살처분 · 소각 · 매몰 · 화학적 처리”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소각 · 매몰”을 “소각 · 매몰 · 화학적 처리”로 한다.

제3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축산관계자 및 시설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의3 및 제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방역위생관리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④ 방역위생관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 또는 방제를 하여야 하며,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소독 또는 방제를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독 또는 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설 · 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소독 및 방제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독 및 방제를 실시하거나 소독 및 방제 실시 사항을 기록 ·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제7항제5호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한 경우

제5조의4(방역위생관리업자에 대한 교육 등) ① 방역위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방역위생관리업자는 소독 및 방제 업무 종사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받게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사항을”을 “사항 및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항을”을 “사항 및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이하 “가축거래상인”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중 “운영자는”을 “운영자 및 가축거래상인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부화장”을 “정액 등 처리업자 및 부화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소독 또는 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였는지 여부

제22조제2항 본문 중 “매몰하여야”를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 중 “소각·매몰”을 각각 “소각·매몰·화학적 처리”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중 “소각·매몰”을 각각 “소각·매몰·화학적 처리”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주변 환경조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예방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결과가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접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 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제1항 및 제2항의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률 제1497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호 중 “소유자”를 “소유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 사업자인 경우 사육경비 수급권의 보호를 위해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해야 한다.

제48조제3항제1호 중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1항·제2항, 제17조의 3제1항·제2항·제5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소각·매몰하는”을 “소각·매몰·화학적 처리하는”으로 한다.

제5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의

농장소유주(관리인 포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가입자의 전기통신 일시,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 가입자 번호, 기지국

위치추적자료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 중 개인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정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5조의2 중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

의사 및 가축의 소유자등

2.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

한 자

법률 제1497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법률 제1497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제60조제1항제3호의 4 및 제3호의5를 각각 제3호의5 및 제3호의6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제5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사자에게 그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방역위생관리업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u>살처분 · 소각 · 매몰</u> 등 가축 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8. <u>살처분 · 소각 · 매몰 · 화학적</u> <u>처리</u> ----- -----
9. 가축의 살처분 및 <u>소각 · 매</u> <u>몰</u> 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 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 · 정 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 함한다)	9. ----- <u>소각 · 매</u> <u>몰 · 화학적 처리</u> ----- ----- ----- -----
10. (생 략) ② ~ ⑤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의3(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 시스템의 구축 · 운영)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3조의3(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 시스템의 구축 ·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u> <u>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u> <u>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u> <u>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농림축</u> <u>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축산관</u> <u>계자 및 시설 등에 대하여 농림</u> <u>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u> <u>따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u> <u>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u>
<u><신 설></u>	제5조의3(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① 가축방역위생관리 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 · 군수 · 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위생
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방역위생관리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
나 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면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방역
위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축방역
위생관리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
로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
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
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방

역위생관리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
상 계속된 경우

④ 방역위생관리업자는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 또는 방제를
하여야 하며, 방역위생관리업자
가 소독 또는 방제를 하였을 때
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소독 또는
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역
위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
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

우

3. 제4항에 따른 소독 및 방제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독 및 방제를 실시하거나 소독 및 방제 실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제7항제5호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가축방역 위생관리업을 한 경우

<신 설>

제5조의4(방역위생관리업자에 대한 교육 등) ① 방역위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방역위생관리업자는 소독 및 방제 업무 종사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6조의2(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

제6조의2(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

<p>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보존하게 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② (생 략)</p> <p>③ 가축의 소유자등,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부화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보존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축방역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p>④ ~ ⑥ (생 략)</p> <p>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p>	----- ----- ----- ----- -----. <p>1. ~ 3. (현행과 같음)</p> <p>4.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이하 “가축거래상인”이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운영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 ----- ----- ----- ----- -----.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 ----- ----- ----- ----- ----- ----- -----.</p> </p>
---	---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 가축검정기관 · 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또는 부 화장의 운영자	4. ----- ----- ----- 정 액 등 처리업자 및 부화장--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 도 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 는 가축방역사에게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⑦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방역 위생관리업자가 소독 또는 방 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 · 보존 하였는지 여부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① (생 략) ②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 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 정밀 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이나 제20 조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① (현 행과 같음) ② ----- ----- ----- ----- -----

한 가축방역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없이 해당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 또는 학술연구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체를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몰지의 규모나 주변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하여야 할 가축의 사체는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손상 또는 해체하지 못한다.

-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하여야 --.

③ -----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

④ -----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결과가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접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제1항 및 제2항의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률 제1497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

법률 제1497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보상금 등) ① -----

<p>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1. · 2. (생 략)</p> <p>3.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u>소유자</u> <단서 신설></p>	<p>-----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p> <p>---- <u>소유자</u>.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 사업자인 경우 사육경비 수급권의 보호를 위해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해야 한다.</p>
<p>4. ~ 6. (생 략)</p> <p>② (생 략)</p> <p>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p> <p>1. 제5조제3항 · 제6항, 제6조의 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3항, <u>제17조제2항</u> 또는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p>	<p>4.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 ----- --.</p> <p>1. ----- ----- ----- -----</p> <p>----- <u>제17조제1항 · 제2항</u>, <u>제17조의3제1항 · 제2항</u> ·</p>

인 포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중가입자의 전기통신 일시,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 가입자 번호, 기지국 위치추적자료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 중 개인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정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유료도로법」

	<p><u>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u></p> <p><u>③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p>
제55조의2(별 칙) <u>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p>제55조의2(별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p>
<u><신 설></u>	<p>1. <u>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의사 및 가축의 소유자등</u></p> <p>2. <u>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u></p>
법률 제1497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p>법률 제1497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p>
제56조(별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제56조(별 칙) ----- ----- ----- -----.</p>
<u>1.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u>	<u><삭 제></u>

<p><u>아니한 수의사,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가축의 소유자등</u></p> <p><u>2. ~ 5. (생 략)</u></p> <p>법률 제1497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p> <p><u>1. ~ 3의3. (생 략)</u></p> <p><u><신 설></u></p> <p><u>3의4. · 3의5. (생 략)</u></p> <p><u>4. ~ 6. (생 략)</u></p> <p><u>② · ③ (생 략)</u></p>	<p><u>1. ~ 4. (현행 제2호부터 제5호 까지와 같음)</u></p> <p>법률 제1497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제60조(과태료) ① ----- ----- ----- --.</p> <p><u>1. ~ 3의3. (현행과 같음)</u></p> <p><u>3의4. 제5조의4제1항 및 제2항 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사자에게 그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방역위생관리업 자</u></p> <p><u>3의5. · 3의6. (현행 제3호의4 및 제3호의5와 같음)</u></p> <p><u>4. ~ 6. (현행과 같음)</u></p> <p><u>② · ③ (현행과 같음)</u></p>
---	---